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 기준 일부개정훈령안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10월 8일 개정된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0조를 반영하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·산정 절차에 시·도지사의 의견청취 과정을 추가하여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신・구조문대비표

2)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37호

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 기준 일부개정훈령안

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청취

제21조제1항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필요한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을 "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0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을 "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한다.

제23조 중 "2022년 1월 1일"을 "2023년 1월 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조사·산정절차) 표준주택가격의 조사·산정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「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」에서 정한 지역분석 등을 실시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.	제14조(조사·산정절차)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청취	7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청취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청취) ①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필요한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표준주	제21조(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청취) ①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0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----------

택의 호별 가격 및 가격변동률, 용도지역·건물구조별 최고·최저가격, 전년대비 가격변동이 현저한 표준주택의 내역 및 변동사유 등 표준주택의 산정가격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	----------.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산정가격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그 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산정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.	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----------.
제2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23조(재검토기한) ---------- 2023년 1월 1일----------.